

인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나764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나7647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가단2235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후

변론 종결2021. 10. 29.

판결 선고2021. 12. 24.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가단2235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대 30m²에 관하여 2019.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11. 18. 접수 제4441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인식

판사이대로

판사이혜선